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3.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 9. 11. 정성국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 2024. 9. 12.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1차 전체회의(2024. 11. 19.)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4. 12. 23.)

상정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5. 2. 6.)

상정 · 축조심사 ·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5. 2. 18.)

상정 · 소위심사보고 · 축조심사 · 찬반토론 ·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정성국의원)

현행법은 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국가

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대다수의 학교에서 현행법상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규정을 근거로 경찰관서에 위원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해 왔으나, 일부 경찰관서에서는 근거법령 미비를 이유로 범죄경력조회 요청을 반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지연되는 등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과 그 후보자에 대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경찰관서의 장에게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운영위원회가 원활히 구성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3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윤상열)

개정안은 ‘위원’뿐만 아니라 ‘위원 후보자’에 대해서도 본인의 동의를 받아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관련 법령에서 요청하는 범죄경력조회에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원활한 구성을 위해 이와 같은 법률 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중 경찰청을 통한 범죄경력조회(같은 조 제3호부터 제6호의4까지)만 규정하고 있으나, 그 외 각호의 내용 등에 대한 조회 및 회신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도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같은 조에 규정된 각 호의 모든 내용에 대해 관계기관에 자료 요청 및 회신이 가능하도록 개정안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4. 대체토론 요지

특이사항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 문정복)

백승아 의원, 서지영 의원, 정성국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고,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6. 찬반토론 요지

특이사항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